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
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
관한 대통령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김민석 (기획재정부 등 7개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,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군 복무, 임신·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관세사법 시행령」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관세사법 시행령」의 개정)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제2호 중 “출산”을 “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전문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
제3조(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의 개정)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, 임신·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

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제4조(「변리사법 시행령」의 개정)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5제2항제2호 중 “출산”을 “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」의 개정)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, 임신·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
제6조(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의 개정)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14 중 “군복무”를 “군복무·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)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, 임신·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
제8조(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의 개정)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, 임신·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연수교육의 시간 등) ① (생략)	제21조(연수교육의 시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3조의3 단서에서 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 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질병, 부상, <u>출산</u> , 군복무 또 는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 상적인 관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	2. ----- <u>임신 · 출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(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8조(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군복무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전문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의2(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보수교육) ① (생략)	제28조의2(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보수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,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, 임신·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5(연수교육의 시간 등)	제17조의5(연수교육의 시간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“질병·휴업 등으로 연수교육 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질병, 부상, <u>출산</u> , 군복무, 장 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 인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	2. ----- <u>임신·출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의 자산운용 전문인력) ① ~ ⑤ (생략) ⑥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받아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18조(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의 자산운용 전문인력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, 임신·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 진 기간 안에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1. ~ 3. (생략) ⑦ · ⑧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의14(나무의사의 교육)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“질 병·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”란 질병·휴직· <u>군복</u> <u>무</u>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 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.	제12조의14(나무의사의 교육) -- ----- ----- ----- <u>군복</u> <u>무·임신·출산</u> ----- -----.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의3(승무원에 대한 교육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10조의3(승무원에 대한 교육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. 다만, 원자력안전위원회는 <u>교육대상자가 군 복무, 임신·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</u>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9조(보수교육) ① (생략)	제149조(보수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, 임신·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</u>
③ 삭제	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418
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365
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417
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964
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076
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	
연 락 처	(042) 481 - 5183
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데이터행정팀	
연 락 처	(02) 397 - 7383